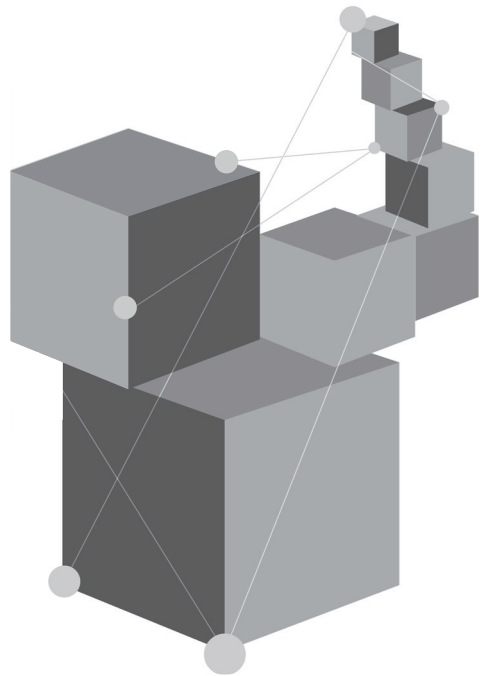


어린이 보호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2012-1103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2년 5월 8일자 14면 연재만화 「강안남자」(원작 이원호 글·그림 김성모) 683회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만화는 주인공 조철봉이 대학시절의 첫사랑 고영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조철봉은 과거 대학시절의 고영민을 회상하는데 당시 고영민과 육체관계를 갖지 못한 일을 후회하면서 “그때 먹었어야 했다”고 독백을 한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흔히 남녀간에 어떤 일방의 의지로 육체관계를 갖는 행위를 일컫는 비속어다. 청소년에게도 노출되어 있는 신문이 만화속 대사라고는 하나 이같은 비속어를 여과없이 사용토록 하는 것은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의 언어습관을 거칠게 만들고 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기 쉽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수준 향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 공기로서 윤리강령을 통해 문화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 신문의 다짐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4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주문〉

스포츠서울 2012년 8월 3일자 17면 극화 「꽃미남 라이브 홍신소」(글 광끼/그림 이세경) 153회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위 만화는 호스트바에 온 할머니 손님과 젊은 남성 종업원 사이에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다. 두 사람은 호텔 객실까지 가게 되고 할머니 손님은 침대위의 벌거벗은 종업원 남성을 애무하는데, 입안의 틀니를 빼고 잇몸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남성의 성기는 직접 묘사하지 않고 벌거벗은 다른 신체부위만 그렸지만 앞뒤의 상황 묘사 자체가 노골적인 성행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스포츠 신문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그 내용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쉬운데, 이처럼 신문에서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만화를 게재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기성세대에 대한 오해를 심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7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주문〉

스포츠서울 극화 「꽃미남 라이브 홍신소」(글 광끼/그림 이세경) 2012년 9월 8일자 17면(184회), 9월 10일자 17면(185회)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위 적시 극화 중 184회는 병원에 입원중인 남성환자를 한 교회 여성 성가대원들이 방문해 포교하는 과정을 그렸다. 교회 여신자들과 남성환자의 대화 중에 남성환자의 성기가 발기하는 바람에 남성이 덮고 있던 시트가 불룩 솟구치자 주변사람들이 모두 놀라는데 뜻밖에 여신자 한 사람이 다가가 이를 어루만지는 장면을 그렸다.

또 185화는 한 실내에서 칼을 든 침입자가 '혁이 오빠'라는 남성의 가슴을 정면으로 찌르고 피가 솟아나는 장면을 그렸다.

청소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포츠신문의 극화가 이처럼 선정적이고 탈선적이며 잔인한 장면을 거리낌없이 게재하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개념과 사회관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 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26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11월 14일자 28면 연재소설 「浣俚波波 알리바바」(글 채희문 그림 현경희) 617회, 11월 15일자 618회, 11월 16일자 619회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헤럴드경제의 위 연재소설은 남한 남성과 북한 여성이 호텔에서 성 관계를 맺는 상황을 여러 날에 걸쳐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은 두 남녀가 성교를 하면서 주고받는 음탕한 대화는 물론, 이들의 교성과 자세 등을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간신문에 이처럼 퇴폐적인 소

설을 게재하면 미풍양속을 해치기 쉽고 독자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기성 세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및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3년 1월 7일자 22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이두식) 45회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소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그때 방안으로 링링이 들어섰다. 링링도 알몸이었는데 손으로 아래도 가리지 않은 채 거침없이 다가온다. 방 안의 불이 환해서 검은 음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오, 대포가 늘어졌네.”

서동수의 남성에 시선을 준 링링이 눈을 크게 뜨면서 침대로 올라왔다. 그러더니 남성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엮드려 입에 넣는다. 말리고 자시고 할 틈도 없어서 서동수는 눈만 깜빡였다. 링링의 입 안에 들어간 남성은 혀가 몇 번 스쳐 지나자 순식간에 곤두섰다.

“오 하느님.”

입을 땀 링링이 감탄사를 뱉더니 얼굴을 들고 서동수를 보았다.

“하실래요?”

“넌 어때? 준비된 거야?”

서동수가 묻자 링링이 옆에 누우면서 말했다.

“나도 해줘요. 허니.”

몸을 일으킨 서동수가 링링의 하체 위로 얹드렸다. 그리고는 두 다리를 치켜세우고 입으로 골짜기를 애무했다.

“아, 아.”

링링의 신음이 방 안을 울렸다, 혀끝이 골짜기 안으로 진입했다가 끝 쪽 클리토리스를 건드리자 링링은 몸을 비틀었다. 클리토리스가 굳어지면서 분홍빛이 강해졌다. 서동수의 혀가 링링의 골짜기 아래에서 클리토리스까지 천천히 쓸고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아, 허니, 허니.”

가쁜 숨을 뱉으면서 링링이 몸을 더욱 비틀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이제 됐어요, 허니.”

링링이 초점이 떨어진 눈동자로 서동수를 향해 소리쳤다. 링링의 골짜기에 서 우윳빛 점액이 넘쳐 나오는 중이다. 서동수는 링링의 다리를 내려놓고 상반신 위로 몸을 세웠다. 그때 링링이 서두르듯 서동수의 남성을 잡아 골짜기 끝에 붙였다. 그리고는 헐떡이며 말했다.

“허니,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그러나 서동수는 힘껏 남성을 진입시켰다.

“아아악.”

링링의 비명이 방 안을 울렸다. 링링의 동굴은 좁았지만 탄력이 강했다. 그리고 동굴의 벽은 무수한 지렁이가 붙어 꿈틀거리는 중이다. 엄청난 자극이 전해져 왔으므로 서동수는 어금니를 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링링의 부탁대로 천천히 남성을 빼내었다.

“아아악.”

남성이 빠져나오는 동안 링링은 온몸을 비틀면서 탄성을 뱉는다. 링링이 부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거칠게 시작해서 천천히.』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연재소설은 남자 주인공과 중국 여성이 아파트에서 성 관계를 맺는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설은 두 남녀가 주고받는 자극적이고 음탕한 대화와 더불어 교성과 신음, 성교 과정에서의 느낌 등을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이 같은 내용의 소설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